

## 인성관 규정(3-7-5)

최종개정일 : 2018.12.06.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들에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기숙사는 논산 창의융합캠퍼스 제1동은 반야학사, 제2동은 구연학사, 제3동은 현암학사, 제5동은 봉소학사, 제6동은 선행화학사라 칭하고, 대전 매디컬캠퍼스는 담곡학사, 청림학사라 칭한다.(개정 2014.12.02.)

제3조(담당부서) 기숙사의 관리 운영은 인성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4.12.02., 2018.07.16)

제4조(지도감독) 기숙사는 총장의 명을 받아 인성관장이 지도, 감독, 교육한다.(개정 2014.12.02.)

제5조(이용제한) 기숙사의 숙소 및 시설물의 이용은 기숙사생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숙사생이 아닌 경우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허가할 수 있다.

제6조(개관기간) 기숙사의 개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개관과 특별개관으로 구분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개정 2014.12.02)

1. 정기개관 : 제1학기 및 제2학기 기간
2. 특별개관 : 하계방학 및 동계방학 기간(개정 2014.12.02.)

제7조(운영) 기숙사의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기본 건물에 대한 시설비 및 유지비는 본 대학교가 부담한다.
2. 기숙사의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숙사비에서 부담한다. 단, 기숙사 운영비, 관리비는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 제2장 운영위원회

제8조(설치) 기숙사 운영의 기본 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 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9조(구성)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인성관장이 되고, 위원은 총무처장, 학생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 3명, 학생자치기구 대표 3명(생활서포터즈)으로 하며 별도로 간사를 둘 수 있다.(개정 2014.12.02., 2018.07.16.)(개정 2018. 12. 6)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12. 6)

제10조(심의사항) 기숙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숙사 운영 규정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2. 기숙사생 수칙의 제정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11조(의결)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3장 직제 및 임무

제12조(조직) 본 기숙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직제로 편성된다.

1. 기숙사에는 인성관장, 사감, 팀장을 둔다.(개정2014.12.02., 2018.07.16)
2. 관리에 필요한 인원은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약간 명을 둔다.

제13조(임용) 인성관장, 사감, 팀장, 직원의 임용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 인사규정에 의한다.(개정 2014.12.02.)

제14조(임무)

- ① 인성관장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
  2. 기숙사생의 생활 지도

3. 입·퇴사에 관한 사항
- ② 사감은 기숙사 운영위원회의 기본 방침에 따라 인성관장을 보좌한다.
- ③ 팀장은 인성관장을 보좌하여 다음 임무를 집행한다.(개정 2014.12.02.)
  1. 시설 및 물품관리 담당
  2. 각종 서류 및 보고서 작성

## 제4장 입사 및 퇴사

제15조(자격) 기숙사의 입사 자격은 본 대학교의 재학생에 한한다.

제16조(입·퇴사) 기숙사의 입사 및 퇴사는 소정의 원서를 제출하여 인성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입사기간) 기숙사의 입사 기간은 학사 일정에 준하여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

제18조(관생선발) 기숙사생의 선발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한다.

1. 지체부자유자, 국가 유공자 자녀
2.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원거리 거주자(단, 학장 이상 추천자)
3. 인성관 관생 선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자체 선발지침에 따른다.(신설 2016.11.10.)

제19조(입사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

1.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16.11.10.)
2. 기숙사에서 징계 등으로 인하여 입사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개정 2016.11.10.)
3. 전염성 질환 이환자 및 보균자
4. 해당학기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 또는 휴학 중인 자.  
단, 부득이하게 학업(수료자)을 계속 유지하여 졸업을 요하는자 중 인성관장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입사를 허용한다.(개정 2016.11.10.)
5. 인성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자

제20조(퇴사처분) 기숙사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성관장이 퇴사 처분하고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1. 기숙사생 수칙을 위반하여 징계퇴사의 처분을 받은 자
2. 기숙사 납부금을 체납한 자
3. 제1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자
4. 기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1조(사비납부) 기숙사생은 기숙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22조(기타) 기숙사 생활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세칙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1993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5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07.16.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범위) 직제규정 제25조(타 규정 적용) 및 전략기획18-0656(2018.07.16.) ‘직제 변경에 따른 규정 내 직제명칭 일괄 개정 계획(안) 보고’에 따른 개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중 “논산창의융합캠퍼스는 학생복지처, 대전 메디컬캠퍼스는 대전 교학처”를 “인성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학처장, 교학부처장, 학사운영팀장”을 각각 “교무처장, 교무부처장, 교무팀장”으로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